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협동조합 종류를 알아봐요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둘 이상의 다른 유형 법인 5개 이상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해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결사체”

지속가능성 | 연대 | 협력 | 민주적인 운영

- ①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원들을 위한 자발적인 설립과 운영
- ② 각 경제 주체의 만족도 향상
: 소비자의 편익 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 ③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참여 확대
- ④ 협동조합 새로운 창업 모델 확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협동조합 7대원칙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자율과 독립
-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특징을 알아봐요



협동조합연합회 특징을 알아봐요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방식	유한책임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모든 사업 분야(금융 및 보험업 제외)	모든 사업 분야(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주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또는 우선출자 발행 협동조합인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 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소관부처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불가	배당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기준에 설립된 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준비 가능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회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회원당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차등 기준은 정관에 명시)		
	책임방식	유한책임		
	사업	모든 사업 분야(금융 및 보험업 제외) ※ 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선택 가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회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개별법 협동조합 (신탁, 생협)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임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만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경영공시	의무 아님 (단,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 30/100이상	영리법인: 10/100 이상 비영리법인: 30/10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영리법인: 배당가능 비영리법인: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I



Q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는 자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Q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저 출자금이 얼마인가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A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조합별로 자유롭게 정관에 1좌당 금액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는 회원 1개소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협동조합**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설립 신고해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은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A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중앙부처별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12P) 참고

Q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을 통해 1인 건적 수의계약 확대가 가능합니다.
*세부정보: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frac{\text{전체 취약계층 근로자(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text{전체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times 100 \geq 30\%$$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II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이란 무엇이고,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

A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주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유형과 판단기준은 각 조합에서 정관에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사업 유형		주사업 내용 및 판단기준	
지역 사업형	판단기준 (택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시간/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고용형	판단기준 (택1)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100분의 40 이상
		직원 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직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기준 (택1)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인원/시간/횟수가 전체의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 대상 인원/시간/횟수	
위탁 사업형	판단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입이 100분의 40 이상
		사업비(수입)	
기타공익 증진형	판단기준 (택1)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지출 중 주 사업 목적을 위한 지출이 100분의 40 이상
		서비스공급	서비스 대상인원/시간/횟수가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
혼합형	판단기준	위 4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위 유형 기준에 따름
		각 유형별 판단 기준의 함에 따름	

협동조합 함께해요



설립지원



인가지원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요구 업무 지원

기본상담

권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6개소) 운영을 통한 설립절차, 기초 제도안내 등 기본상담 지원

설립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예비 설립자를 위한 설립 관련 교육 지원

운영지원



전문상시상담

협동조합 설립·운영상의 애로사항 관련 분야별 전문가 상담 제공

경영공시

경영공시 정보 제공 및 협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한 총회·이사회 운영지원

협동조합 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설립·운영 기초교육(온·오프라인) 및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판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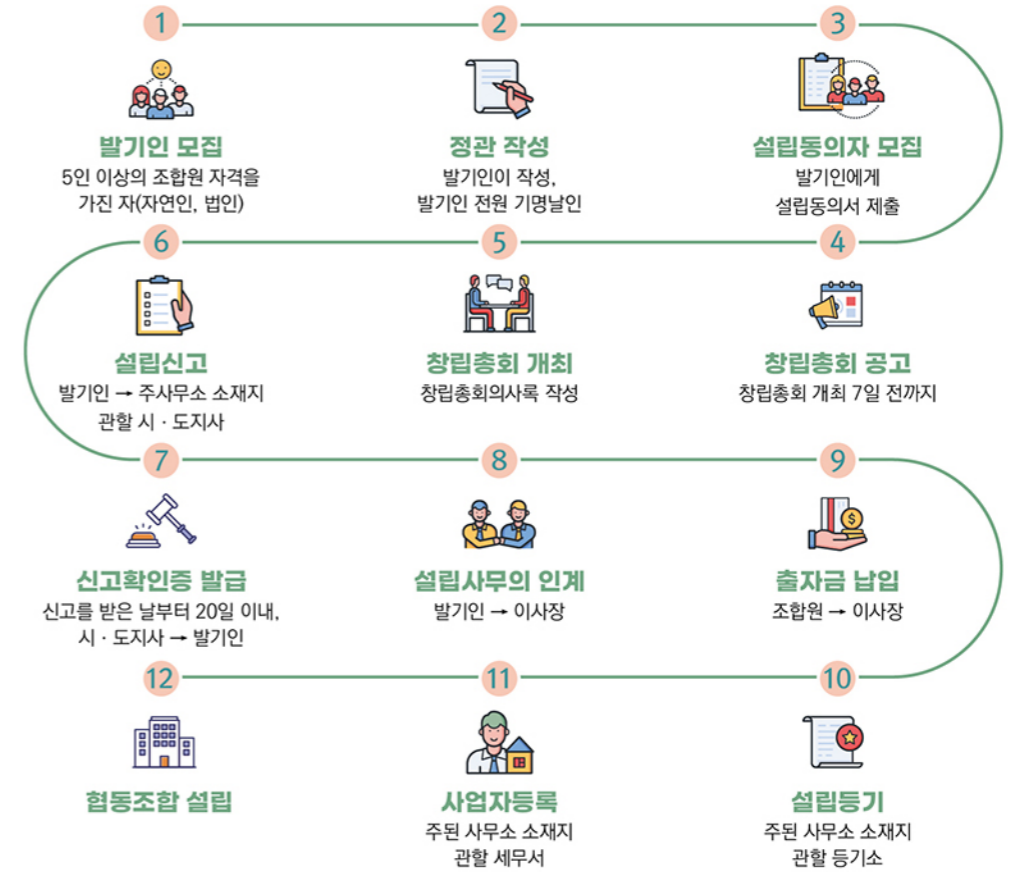
민간판로

협동조합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발굴 및 개선 지원, 유통채널 입점 지원

공공판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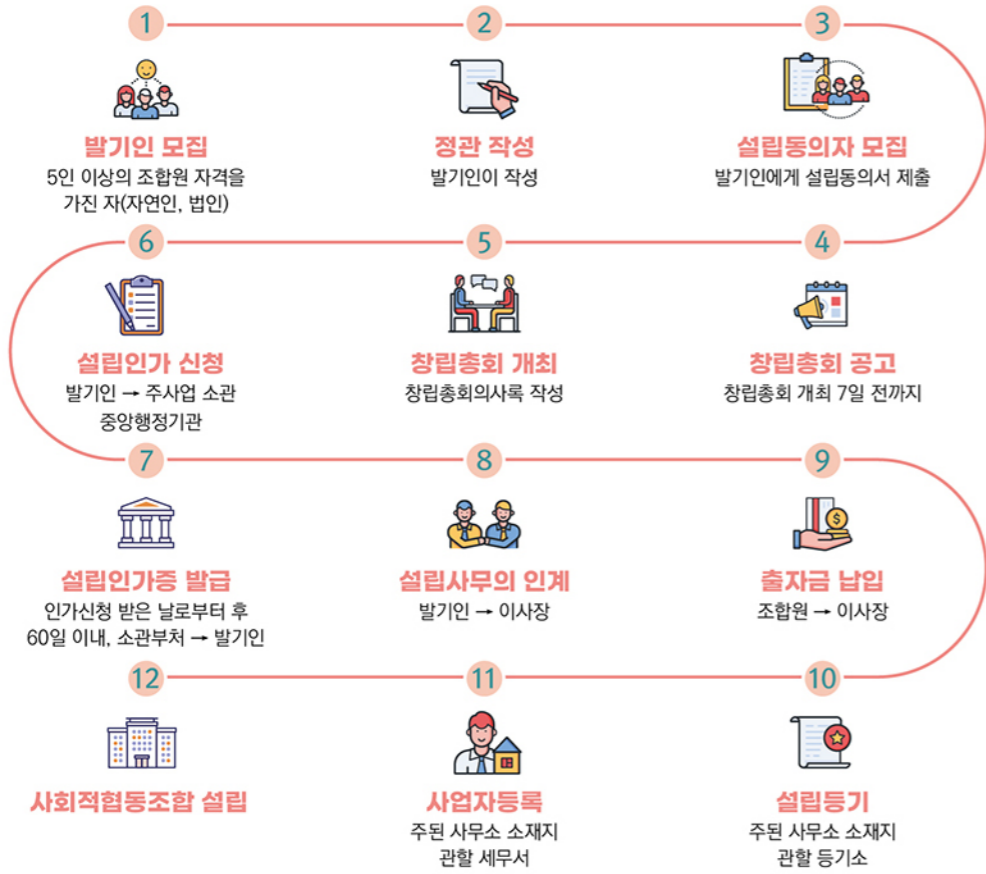
협동조합 설립절차



신청서류

- ① 설립 신고서 1부
- ② 정관 사본 1부
-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⑤ 임원 명부 1부
- ⑥ 사업계획서 1부
- ⑦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출자자명부) 1부
-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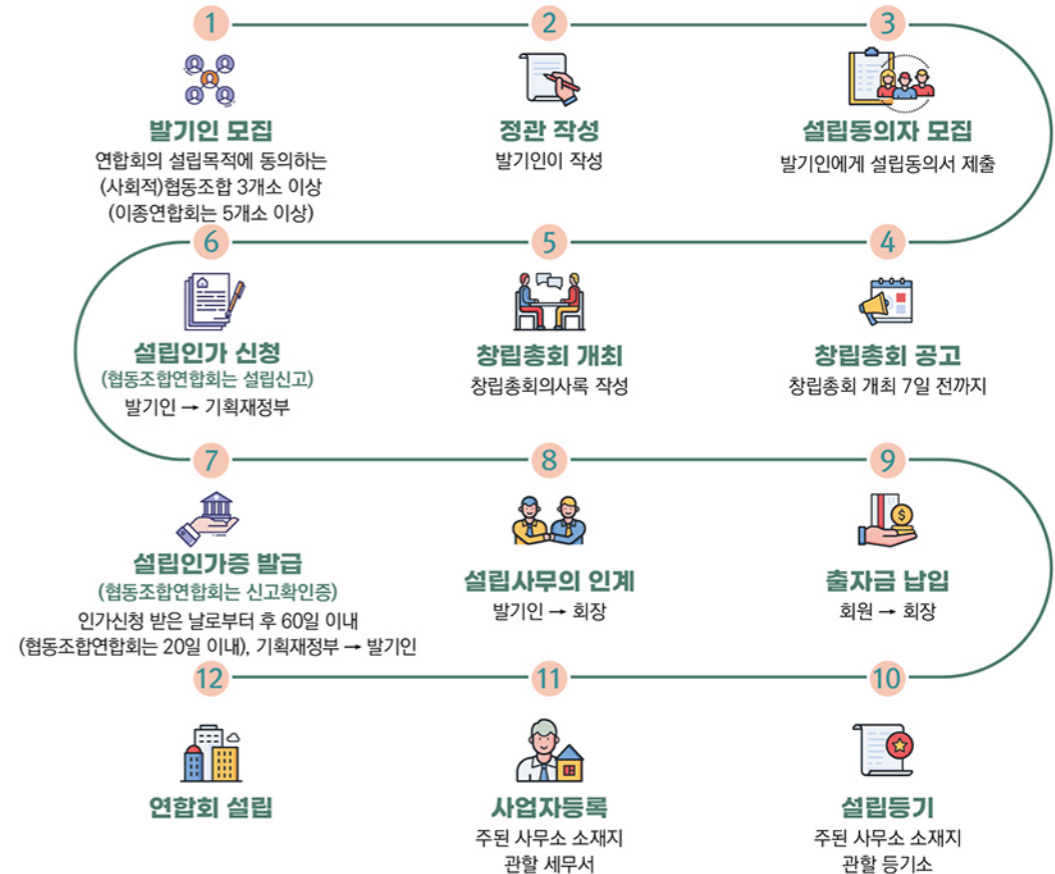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신청 서류

-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 ② 정관 사본 1부
 -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⑤ 임원 명부와 임원이력서(임원약력) 각 1부
 - ⑥ 사업계획서 1부
 - ⑦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⑩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 등)
 -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사본 1부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설립가이드 세부정보
- ※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연합회 설립절차



신청 서류

- ① 설립인가(신고) 신청서 1부(단,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신고서)
 - ② 정관 사본 1부
 -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⑤ 임원 명부와 임원이력서(임원약력) 각 1부
 - ⑥ 사업계획서 1부
 - ⑦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1부
 -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
- 추가 증빙자료**
- ① 세부사업계획서
 - ② 각 회원사별 추가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가증명서, 연합회 가입 의결을 위한 이사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조합원(출자자)명부) 각 1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접수처

기관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주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044-202-562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044-200-705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3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42-481-745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서비스정책과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044-215-593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9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행정법무담당관 5층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3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043-719-768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태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36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100-56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7층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4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법무과	02-2110-387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2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	063-733-1303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3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67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신청('24.1.기준)

협동조합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권역별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본상담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성장지원센터 현황

권역	센터장	주소	전화번호
서울1	소셜캠퍼스 온 서울 (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4, 2518
경기1	소셜캠퍼스 온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지점 5, 6층	031-757-2547, 2542
광주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73, 2167
세종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81, 0785
대구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3, 9821
부산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5, 6층	051-753-2505, 2507

* 2024. 2. 기준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



협동조합 온라인교육
<https://coopedu.step.or.kr/main.do>



협동조합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op_20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문의
☎ 031-697-6971, 2 



협동조합 설립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